

상해 조세사전결정 “공식적으로 시행”:

2025년 신규 버전 <방법> 해설

2025.11
Issue 13

개요

2025년 10월 24일, 국가세무총국 상해시 세무국에서는 <상해시 세무국 조세사전결정 업무관리방법> (沪税办发(상해세무국판공실발표)[2025]13호, 이하 “신방법”이라 함)¹을 발표했습니다. 신방법은 이전에 발표된 <상해시 세무국 조세사전결정 업무관리방법(시범 시행)>² (沪税办发[2023]33호, 이하 “기존 방법”이라 함)을 대체하였으며, 발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존 방법에 비해, 신방법은 적용 범위를 확대시켰고,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은 조세 사항을 접수 범위에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주관 세무기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층 더 명확히 정리하였고, 접수 레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 세무국의 재검토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 추가된 “결정 구속력” 조항인데, 이는 기업에 대해 보다

높은 조세 정책 적용 확실성을 제공했고, 투자의 자신감과 안전감을 향상시켰습니다. 복잡한 사항이 있는 기업, 특히 M&A 및 재편, 신흥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된 납세자의 경우, 신방법을 활용하여 조세 사항을 미리 계획하고 조세사전결정을 신청하여 세무 리스크를 낮추며 사업상의 결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개정 배경

조세사전결정은 기업의 조세 확실성을 향상시키고 세수징수관리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서,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정책의 지도하에 전국 모색, 성급 심화, 지방 돌파의 발전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국무원은 <세수징수관리 개혁의 추가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대기업 조세사전결정을 모색 및 실시하고 관련 제도를 구축 및 보완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방향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이어서 광저우, 심천 등 각 지역에서는 사전결정의 타결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상해는 전국 최초로 성/시급 세무기관 자격으로 사전결정 업무관리방법을 발표함으로써, 조세관리 서비스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상해를 이어 북경, 중경에서도 잇따라 성/시급 사전결정 세칙을 발표했습니다. 각 지역 사전결정제도에 대한 인사이트는 PwC 뉴스플래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³

성급 규범이 출범된 후, 여러 지역은 조세사전결정의 사례 타결을 가속화했습니다. 상해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시범 시행 기간 동안 6개의 조세사전결정 사례⁴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토지사용권 회수, 기업 재편의 특수성 세무처리, 파산 재편, 토지 이전, 신형 서비스의 증치세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상해 신방법에서 ‘시범 시행’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신방법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해의 조세사전결정이 모색 단계에서 안정적 시행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전국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무 표본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적용 범위

신방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금번 개정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사항 확대:** 기존 방법은 “기업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특정 복잡한 조세 사항”만 접수하였는데, 신방법은 “이미 발생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납세신고 기한이 3 개월 이상 남은 복잡한 조세 사항”도 접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PwC 의 관찰

해당 변경사항은 신청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재편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정산납부 시점에서야 비안(등록)을 진행하는데, 만약 재편 후 사전결정을 신청할 기회가 있다면 조세 확실성을 미리 획득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이미 발생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최소 3 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조세사전결정의 절차가 길며, 신청접수, 자료심사, 집체연구, 시세무국재검토 등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신고 기한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결정의 결론이 아직 발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적용 납세자 범위 확대:** 기존 방법은 “본 시 범위 내의 단위(기업 또는 단체) 납세자”로 제한했었는데, 신방법은 “납세자가 본 시 내에 있는 조세사항”으로 조정했습니다.

PwC 의 관찰

기존 방법에 비해, 신방법은 규정이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이며, 더 이상 신청 주체를 요구하지 않고 “단위납세자”가 아닌 “조세사항”을 강조하게 됩니다. 비거주자 납세자와 타지역(성/시) 기업의 경우에도 조세 사항의 납세자가 상해에 있으면 신청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 적용되지 않은 두 가지 경우가 새로 추가됨:** 신방법에 따르면, 사전결정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된 프로젝트 승인 계획이 없거나 24 개월 이내에 발생하지 않을 사항. (2)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이 없거나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서 명확히 금지한 사항. (3) 현행 조세 정책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 (4) 행정, 사법 부문이 처리하고 있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항. (5) 신청자가 이전연도에 완료한 거래 사항과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세무 처리 결론이 이미 내려진 사항. (6) 기타.

여기서 (4)와 (5)는 접수받지 않는 경우로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PwC 의 관찰

- 신규 사항 (4)와 관련하여, 중경의 조세사전결정방법에 유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행정부의(이의제기), 세무조사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결정의 신청을 접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사항 (5)와 관련하여, 북경의 조세사전결정방법에 유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유사 조항은 “신청자가 이전연도에 완료한 거래 사항과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이와 더불어 해당 이전연도 거래 사항과 관련하여 세무기관과 소통하는 중이며 세무처리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사항”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상해의 문서는 “세무처리 결론이 이미 난 사항”을 명확히 제외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상기 두 가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추가된 것은 모두 서로 다른 세무 부문 간 상충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기관의 후속 조치를 위해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다툼의 여지를 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심의, 결정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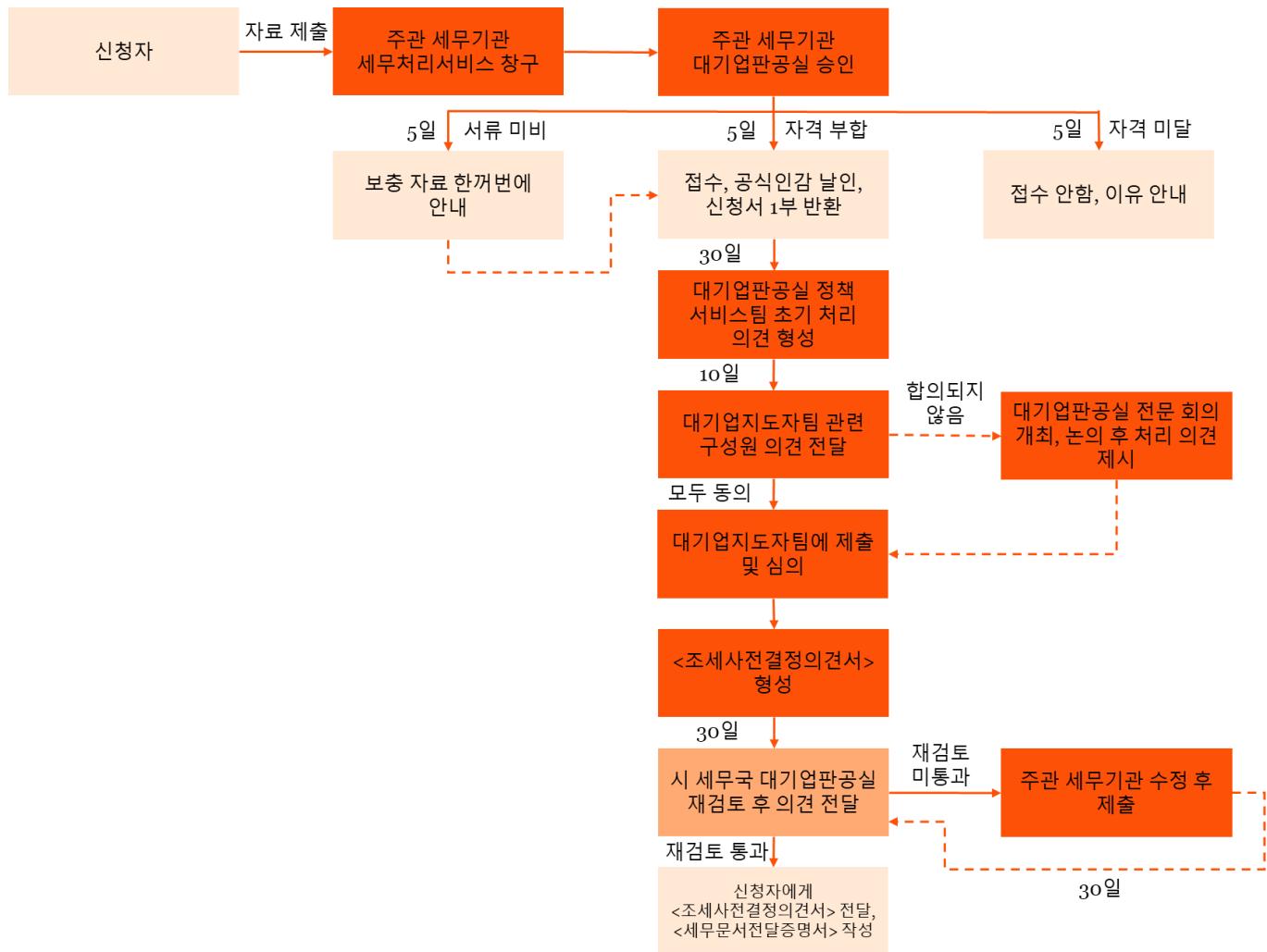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 방법은 시, 구 두 레벨이 신청을 접수하고 결정을 발급할 것을 규정했는데, 두 레벨 간 권한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신방법은 접수 및 결정의 주체가 “신청자의 주관 세무기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업은 주관 세무기관의 세무처리 서비스창구에 신청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권한과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결정 의견은 주로 주관 세무기관의 대기업세수업무지도자팀 판공실(대기업판공실)이 작성하고 피드백을 수집하며, 다시 시 세무국 대기업판공실의 재검토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주관 세무기관이 <조세사전결정의견서>를 신청자에게 전달합니다. 신방법 시행 이후, 기업은 일상 세무사항 처리를 담당하는 주관 세무기관 세무처리 서비스창구를 통해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기업관리부문과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세무기관 내부 기능 분업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출 모델로 인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요 시간과 관련하여, 기존 방법이든 신방법이든 신청 기간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신청자는 3 개월 내외로 사전결정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조세사전결정 관련 사항은 복잡한 세무사항이 많고 통상적으로는 서로 다른 세무기관 레벨, 부문 간 소통 및 조율을 거쳐야 하므로 처리 단계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신방법은 접수, 초기 의견 형성, 피드백 수집의 소요 시간을 다시 부연설명했지만, 신청자는 계획 시 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되도록 빨리

신청 절차를 밟을 것을 권장드리며, 소통과 조율 또는 자료 보충 등으로 인해 신청 주기가 길게 늘어져 결정 결론이 실제 업무에 대한 지도 효과와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서와 관련하여, 기존 방법과 신방법하의 신청 서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조세사전결정신청서>, <조세사전결정확인서>, 관련 사항에 대한 단위의 승인, 검토 또는 결정 문서(있는 경우), 계약서, 협의서, 회의록 또는 타당성 연구보고서 등 관련 보조 자료 및 세무기관이 요청하는 기타 자료를 포함합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신청자는 <조세사전결정신청서>에서 결정 신청 사항, 경향성 의견, 생산 및 경영과 납세에 대한 영향, 관련 각 기업의 상황, 관련 과세기간, 정책 근거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결정의 전제는 신청자가 신청 예정 사항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한 세무 분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세무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정 사항에 대한 세무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합법성,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갖추는 것은 <조세사전결정의견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요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은 상해 조세사전결정의 신청 절차와 소요 시간 규정을 기업 참고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주: 상황이 복잡하고 영향이 중대하며 높은 레벨에 지시를 요청해야 하는 등 특수 상황이 있으므로, 해당 레벨의 대기업판공실 주임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시 및 사후 관리

신방법에서는 “사전결정 의견은 신청자가 이번에 신청한 조세사항에 한하여 본 시 세무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전국 각 성/시 결정 규칙의 혁신적인 돌파로서, 처음으로 세무기관에 대한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명확히 했고, 신청자에게 비교적 높은 확실성을 주었습니다. 우선, 구속력 범위에 있어 사전결정 의견은 단지 “본 시 세무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추었을 뿐이며, 납세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무를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여전히 결정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신방법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합법적이고 실제로 발생한 조세 사항이 신청 자료상의 내용과 일치하며, 이와 더불어 세무기관이 결정을 발급하는 데 의거한 조세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기업이 결정 의견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면, 향후 세무기관이 다른 이유로 해당 세무처리를 조정하는 경우 기업에 대한 행정 처벌을 하지 않을 것임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실무 관점에서 기업이 결정 결론을 신뢰하는 기초를 한층 더 강화한 것입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사전결정은 “특정 대상, 특정 시기, 특정 사항, 특정 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결정 의견은 해당 신청자의 이번 신청 거래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납세자가 같은 거래가 있거나 동일 납세자가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다른 거래가 있더라도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방법은 양자의 의무를 보류했습니다. 즉, 기업은 결정 사항에 실질적인 변화(예: 거래 대상 변경)가 발생한 후 30 일 이내 주관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필요 시 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관 세무기관은 결정 사항의 실제 실시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하며, 기업이 24 개월 이내 결정 신청에 관한 상업 또는 거래 행위, 정책에 따른 조정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면 결정 실시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의 중단 또는 취소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신방법은 상해 조세사전결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켰고, 신청 절차를 개선했으며, 기업이 조세 확실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상해 현지의 사전결정 외에, 신방법 제 22 조는 상해시 세무국이 장강 삼각주 지역의 조세사전결정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의 수요를 보자면, 납세자는 향후 해당 지역의 협업 제도를 통해 “한 번 신청으로 여러 성에서 인정”을 실현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현재 성 간 사항에 대한 결정 결론을 상호 인정하지 않는 난제를 해결하고 장강 삼각주 지역 내 기업에 대해 보다 통일되고 효율적인 조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석

1. 《상해시 세무국 조세사전결정 업무관리방법》(沪税办发[2025]13 호)

<https://shanghai.chinatax.gov.cn/zzzb/zcwj/202510/t478074.html>

2. 《상해시 세무국 조세사전결정 업무관리방법(시범 시행)》(沪税办发[2023]33호)

<https://shanghai.chinatax.gov.cn/sjtax/ztl/yshj/ldjj/202401/t470312.html>

3. PwC 《Newsflash》2022년 Issue 20: 《각 지역의 지역간 조세사전결정 모색, 국가 지역 협조 발전 전략
뒷받침 목적》

https://mp.weixin.qq.com/s/wCVexiOSbEehp_ct2JneNg

PwC 《Newsflash》2024년 Issue 1: 《2024 조세 정책 중대 혁신 해설: 상해 조세사전결정 시범 시행,
조세 확실성 향상》

<https://www.pwccn.com/zh/china-tax-news/2024q1/chinatax-news-jan2024-1.pdf>

PwC 《Newsflash》2024년 Issue 11: 《북경 조세사전결정 시범 시행, 조세 경영 환경 개선》

<https://www.pwccn.com/zh/china-tax-news/2024q2/chinatax-news-may2024-11.pdf>

PwC 《Newsflash》2024년 Issue 16: 《사례에 기반한 혁신 모색—PwC, 복건성 최초의 국제조세
사전결정 타결 지원》

<https://www.pwccn.com/zh/china-tax-news/2024q3/chinatax-news-aug2024-16.pdf>

4. 상해 조세사전결정 사례

<https://shanghai.chinatax.gov.cn/tax/bsfw/sssxcd/index.html>

CONTACT LIST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1) 2323-8174, younggi.y.choi@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뉴스플래시(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新知

中国税务/商务专业服务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5 年 11 月 5 日编制而成的。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2025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

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